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is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년 05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06월 27일
※ 본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들에게서는 투자판단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 명 칭 |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89352) | | | |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 C1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5 | 종류Cw | 종류 C-e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89960 | 89770 | 96374 | 96375 | 96376 | 96377 | 44566 | 94029 |

2. 모집예정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 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이 납입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내용 |
|------|------------------------------------|---|
| ①주식 |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60%이상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내용 |
|------|-------|---|
| ②채권 | 4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시장환경에 적극적 대응하며 중장기적 우량주, 저평가 및 성장성 높은 개별종목에 투자
- 편입비율 조정을 통하여 지수대비 초과수익 달성

※ 비교지수 : $([\text{주식 약관비}] * 0.9 * [\text{KOSPI}]) + ((1 - [\text{주식 약관비}]) * 0.9 * [\text{매경BP국공채1년}]) + (0.1 * \text{MMI종합지수}^{\text{주2)})$

주1) 상기 비교지수는 주식 및 채권의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주식투자비율이 높을수록 KOSPI 변동폭을 주로 추종하며, 낮을수록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지수를 추종합니다.

주2) 단기자금시장지수(MMI지수 : Money Market Index) :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된 CP, CD, Call을 포함하는 총 수익지수로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단기유동자산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주3)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펀드설정 초기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기 및 월별 모델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기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을 기본 전제로 하되, 투자환경 및 대상 투자대상자산 운용상 큰 변화 발생시 월간 및 수시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청구시 위험 |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등급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개요 및 예시 |
|------|---------|---|
| 1등급 | 매우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주1)}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비보장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 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주2)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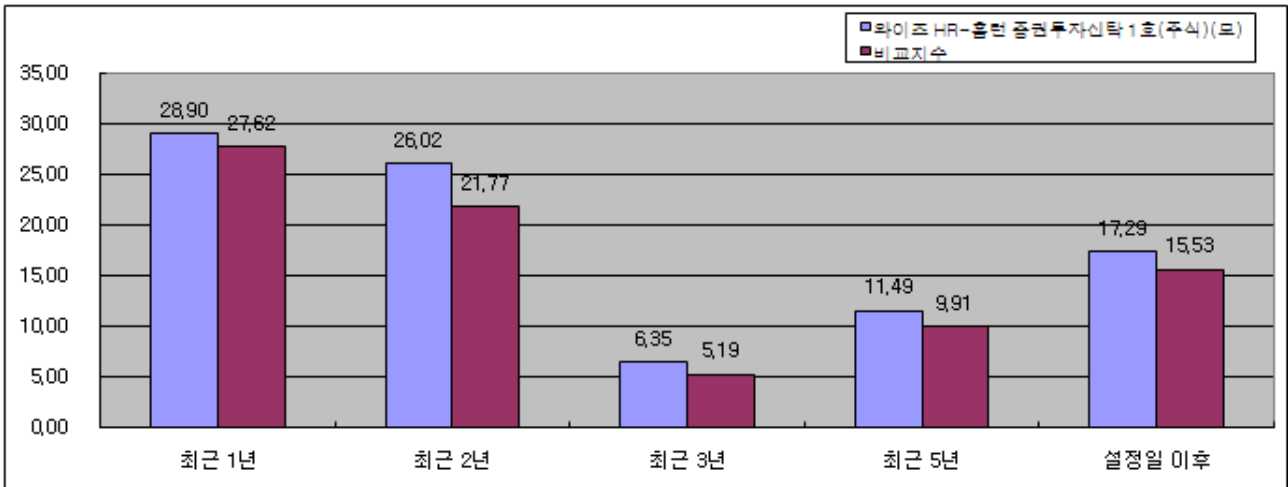
6. 운용전문인력

| 이름 | 생년 | 직위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수 | 규모(수탁고) | |
| 유구녕 | 1971년 | 부장 | 26개 | 302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 99.12 ~ 02.07 서울증권 투자분석팀 • 02.07 ~ 09.10 튜브투자자문 리서치팀 • 09.12 ~ 현재 와이즈에셋 주식운용팀 |

- 주) 위 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 주) 위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 없음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10.06.01 ~11.05.31 | 09.06.01 ~11.05.31 | 08.06.01 ~11.05.31 | 06.06.01 ~11.05.31 | 04.05.18 ~11.05.31 |
| 와이즈 HR-홍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 28.90 | 26.02 | 6.35 | 11.49 | 17.29 |
| 비교지수 | 27.62 | 21.77 | 5.19 | 9.91 | 15.53 |
| 종류 Cw | 28.48 | 25.61 | 6.06 | 11.31 | 17.15 |
| 비교지수 | 27.62 | 21.77 | 5.19 | 9.91 | 15.53 |
| 종류 A | 30.00 | 0.00 | | | 11.35 |
| 비교지수 | 27.62 | 0.00 | | | 9.63 |
| 종류 C1 | 26.74 | 23.91 | | | 31.23 |
| 비교지수 | 3.40 | 3.65 | | | 4.45 |
| 종류 C-e | | | | | 25.37 |
| 비교지수 | | | | | 2.56 |
| 종류 C2 | | | | | 12.05 |
| 비교지수 | | | | | -8.70 |
| 종류 C3 | | | | | 8.25 |
| 비교지수 | | | | |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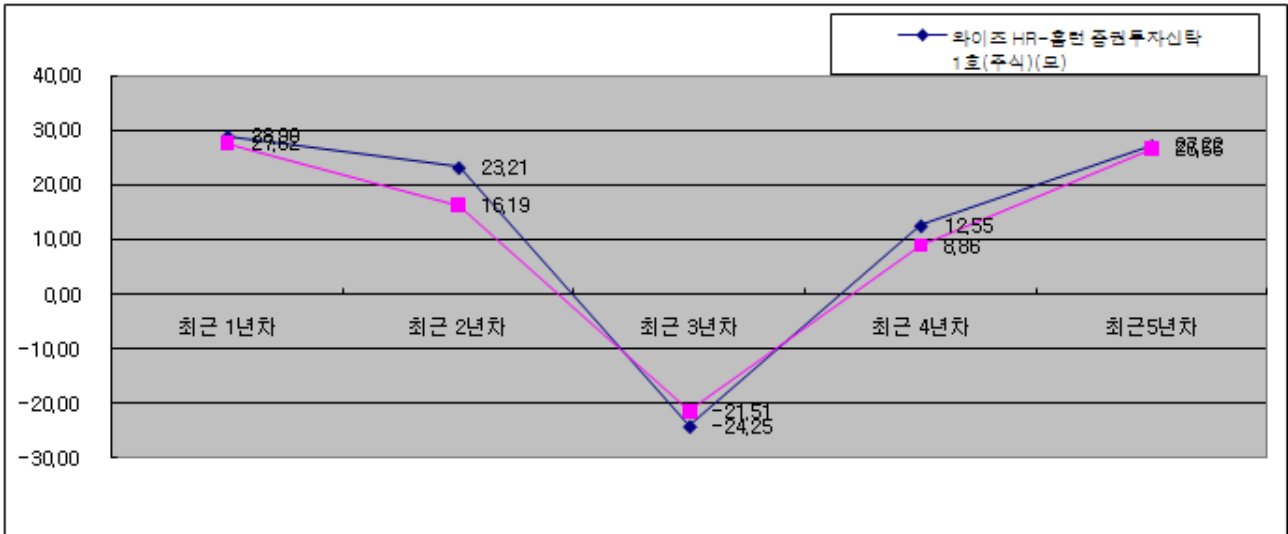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주식 약관비]*0.9 * [KOSPI]) + ((1-[주식 약관비])*0.9 * [매경BP국공채 1년]) + (0.1 * [MMI종합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최근 5년차 |
|------------------------------|-----------------------|-----------------------|-----------------------|-----------------------|-----------------------|
| | 10.06.01 ~11.05.31 | 09.06.01 ~10.05.31 | 08.06.01 ~09.05.31 | 07.06.01 ~08.05.31 | 06.06.01 ~07.05.31 |
|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 28.90 | 23.21 | -24.25 | 12.55 | 27.22 |
| 비교지수 | 27.62 | 16.19 | -21.51 | 8.86 | 26.56 |
| 종류 Cw | 28.48 | 22.81 | -24.38 | 12.55 | 27.22 |
| 비교지수 | 27.62 | 16.19 | -21.51 | 8.86 | 26.56 |
| 종류 A | 30.00 | 0.00 | | | |
| 비교지수 | 27.62 | 0.00 | | | |
| 종류 C1 | 26.74 | 21.14 | | | |
| 비교지수 | 3.40 | 3.90 | | | |
| 종류 C-e | 25.37 | | | | |
| 비교지수 | 2.56 | | | | |
| 종류 C2 | 95.84 | | | | |
| 비교지수 | 0.00 | | | | |

주1) 비교지수 : ([주식 약관비]*0.9 * [KOSPI]) + ((1-[주식 약관비])*0.9 * [매경BP국공채 1년]) + (0.1 * [MMI종합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종류 A | 납입금액의 1%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종류 C1 | - | - | |
| 종류 C2 | - | - | |
| 종류 C3 | - | - | |
| 종류 C4 | - | - | |
| 종류 C5 | - | - | |
| 종류 C-e | - | - | |
| 종류 Cw | - | - | - |
| 지급시기 | 매입시 | - | 환매시 |

※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별 | 펀드코드 | 가입자격 |
|--------|-------|-------------------------------|
| 종류 A | 89960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1 | 89770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2 | 96374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종류 C3 | 96375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종류 C4 | 96376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종류 C5 | 96377 |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 종류 Cw | 44566 | 웹어카운트 가입고객 |
| 종류 C-e | 94029 | 온라인 가입고객 |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로 자동 전환됩니다.
- ▷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의 경우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종류 C1만 최초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 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단, 전환한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부과비율 (연간, %) | | | 부과시기 |
|------------|--------------|--------|--------|-------------|
| | 종류 A | 종류 Cw | 종류 C-e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2500 | 0.2500 | 0.2500 | 매 3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5000 | 0.0000 | 0.9000 | |
| 신탁업자보수 | 0.0500 | 0.0500 | 0.05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250 | 0.0250 | 0.0250 | |
| 기타비용 | 0.0000 | 0.0055 | 0.000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 | 0.8250 | 0.3305 | 1.2250 | |
| 증권 거래비용 | 0.0000 | 0.6151 | 0.6869 | 사유발생시 |

| 구분 | 부과비율 (연간, %) | | | | | 부과시기 |
|------------|--------------|--------|--------|--------|--------|-------------|
| | 종류 C1 |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2500 | 0.2500 | 0.2500 | 0.2500 | 0.2500 | 매 3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1.4000 | 1.3000 | 1.2000 | 1.1000 | 1.0000 | |
| 신탁업자보수 | 0.0500 | 0.0500 | 0.0500 | 0.0500 | 0.05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
| 기타비용 | 0.0031 | 0.0031 | 0.0031 | 0.0031 | 0.0031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 | 1.7281 | 1.6281 | 1.5281 | 1.4281 | 1.3281 | |
| 증권 거래비용 | 0.5776 | 0.5776 | 0.5776 | 0.5776 | 0.5776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 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2010.05.18~2011.05.17]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2010.05.18 ~ 2011.05.17]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 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 구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종류 A | 85 | 264 | 459 | 1,023 |
| 종류 C1 | 177 | 549 | 945 | 2,052 |
| 종류 C-e | 124 | 385 | 667 | 1,470 |
| 종류 Cw | 34 | 106 | 185 | 41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를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 보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는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로 자동전환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는 종류 C1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주)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의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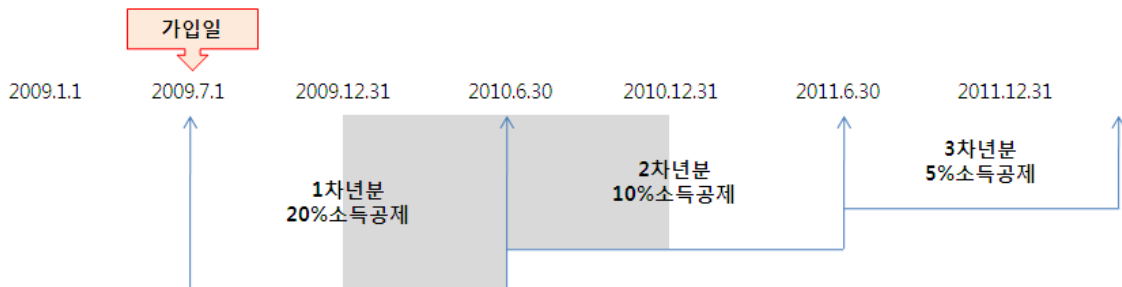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회사(www.wis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 후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 D+1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div>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 D+1 D+2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div> |
|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D D+1 D+2 D+3 (납입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div>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D D+1 D+2 D+3 (납입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div> |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 항 목 | 제 7 기 (2011.05.17) | 제 6 기 (2010.05.17) | 제 5 기 (2009.05.17) |
|----------|-------------------------|-------------------------|-------------------------|
| 운동자산 | 4,832,814,719 | 75,247,631,553 | 102,069,743,090 |
| 증권 | 4,828,707,200 | 75,115,808,200 | 97,678,083,500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4,107,519 | 131,823,353 | 4,391,659,590 |
| 기타 운동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295,588,339 | 1,838,956,624 | 2,430,777,017 |
| 자산총계 | 5,128,403,058 | 77,086,588,177 | 104,500,520,107 |
| 운동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166,015,369 | 2,431,335,320 | 2,406,453,636 |
| 부채총계 | 166,015,369 | 2,431,335,320 | 2,406,453,636 |
| 원본 | 4,281,030,705 | 81,043,527,410 | 140,242,571,895 |
| 수익조정금 | -9,951,309,985 | -8,777,471,856 | -35,342,783,157 |
| 이익잉여금 | 10,632,666,969 | 2,389,197,303 | -2,805,722,267 |
| 자본총계 | 4,962,387,689 | 74,655,252,857 | 102,094,066,471 |

(단위:원,%)

| 항 목 | 제7기 2010.05.18~2011.05.17 | 제6기 2009.05.18~2010.05.17 | 제 5 기 2008.05.18~2009.05.17 |
|------------|------------------------------|------------------------------|--------------------------------|
| 운동수익 | 11,086,479,725 | 24,653,198,965 | -5,508,743,770 |
| 이자수익 | 46,182,098 | 95,794,611 | 27,539,868 |
| 배당수익 | 291,479,230 | 1,168,736,150 | 1,202,447,508 |
| 매매/평가수익(손) | 10,748,818,397 | 23,388,668,204 | -6,733,731,146 |
| 기타수익 | 111,161 | 19,223 | 12,280 |
| 운동비용 | 137,172,783 | 281,675,971 | 284,788,047 |
| 관련회사 보수 | 137,172,783 | 281,675,971 | 284,788,047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316,751,134 | 28,521,145 | 30,107,322 |
| 당기순이익 | 10,632,666,969 | 24,343,021,772 | -5,823,626,859 |
| 매매회전율 | 390.55 | 289.62 | 343.09 |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